



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- 성북구청 교육분야 협력 협약서



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(이하, “교육연구정보원”이라고 한다)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(이하, “성북구청”이라고 한다)은 진로진학에 대한 입시설명회 및 입시상담실 사업 등 교육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며,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『대학입시설명회 및 입시상담실』(이하 ‘본 사업’이라고 한다) 사업 등 교육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교육연구정보원과 성북구청(이하 ‘양 기관’)이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범위)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교육분야에 대해 상호간의 관심과 필요에 근거하여 인적·물적 교류 등의 폭넓은 협력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며, 본 협약에 의한 각종 사업은 양 기관의 상호협약에 따라 진행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상호 노력한다.

1. 입시설명회 및 입시상담실 강사 및 상담교사 추천
2. 진로교육, 대학 진학지도 정보 지원
3. 성북구 교육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공유
4.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사업

제4조(상호협약) 양 기관은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협력에 있어서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각 기관의 각종 제도 및 규정을 존중하며, 협력사업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한다.

제5조 (협약의 신의성실 이행) 양 기관은 ‘본 사업’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협약과 관련된 제반의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.

제6조 (협약의 중도해지) ① 양 기관은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

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전쟁, 경제적 환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
2. 양 기관이 중대한 기관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어느 한 기관이 협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

② 양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 희망일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해석)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, 관련법령,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협약의 효력) ① 본 협약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.

②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내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으로 된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을 연장한다.

③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의 협의 및 결정에 의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7월 일



원장 정인순



구청장 김영배